

[별표 3] <개정 2016. 6. 28.>

**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**(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)

| 근거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           | 경제자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|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                  |
| 3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·관광단지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43조           | 도시·군계획시설 예정지(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) |
| 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3항             | 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)     |
| 6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5조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개발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           | 물류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                  | 공공주택지구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·제40조의2        |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              |
| 11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·제11조                      |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      |
| 1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택지개발지구                         |